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24283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5. 16.
판 결 선 고 2017.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15.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AAA에 대한 채권자인데, AAA의 모친인 C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AAA과 피고가 2011. 9. 15.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AAA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이를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하여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를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

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 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갑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AAA은 2011. 11. 22. 피상속인 망 C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1.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3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AAA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AAA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로 이후 AAA의 상속포기가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었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는

AAA에게는 상속포기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두